공 개

의안번호	제 8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1차)

의결사항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소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1. 의결주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뿐만 아니라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이 금융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금융거래등 제한대상 확대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9.19.~10.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를 각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제3호나목(1) 중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2. ----------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나. ----------
(1) 금융위원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1)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참고 **규정 조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특히 제1718호와 제1988호)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0호(2006년)에 따라 설립된 아래 "중심담당자(the Focal Point)"에게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중심 담당자 (Focal Point for De-listing)
Security Council Subsidiary Organs Branch
Room DC2-2034, United Nations
New York, N.Y.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Tel.+1 917 367 9448, Fax.+1 212 963 1300
Email: delisting@un.org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와 그 후속결의 및 1267/1989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ISIL과 알카에다 제재위원회 고충처리담당관(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ISIL과 알카에다 제재위원회 고충처리담당관 사무실 (Office of the 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
Room DC2-2206, United Nations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Tel:+1 212 963 2671
E-mail: ombudsperson@un.org

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금융위원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함

(3)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이름이 같거나 유사하여 의도치 않게 금융거래등이 제한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연 락 처	02-2100-1741